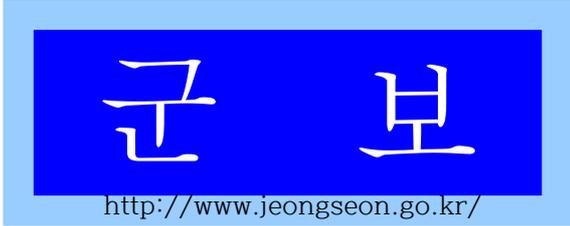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46호 2020. 11. 18.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255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고토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2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210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 실시계획 공람 · 공고 .....4
- 정선군 공고 제2020-1226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7
- 정선군 공고 제2020-1235호 고한읍 고한1길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행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0-123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255호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고토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정선군고시 제2016-91호(2016. 08. 31.)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고시 제2018-216호(2018. 11. 3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고토일)에 대하여 사업장 지적 등록전환(정정보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일원(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고토일)사업
  - 나. 명 칭 : 경일(고토일)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 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위치	규모	금회시행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일원	A=7,870㎡	A=7,870㎡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표 이청룡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 5.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1.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변경)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	고한읍 고한리	산113-2	임	3,429	3,270	172-2	임	3,344	3,270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한국광해 관리공단
2	고한읍 고한리	산113-3	임	5,328	4,600	172-3	임	5,192	4,600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한국광해 관리공단
계		2필지		8,757	7,870	2필지		8,536	7,870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210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 실시계획 공람·공고

- 1. 정선군 고시 제2001-83호(2001. 11. 17)로 최초 결정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06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8-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 사업
- 2)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 개설사업(2차분)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3-8호선	L=76.0m, B=5~6m	L=52.1m, B=6.0m	L=23.9m, B=5.0m (A=154m <sup>2</sup>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11. 06~2020. 11. 20.)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5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남면 문곡리	123-7	전	287	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남면 문곡리	122-16	대	31	2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남면 문곡리	123-8	대	85	74	남면 별어곡2길 7	김*출	-	-	-
4	남면 문곡리	123-3	대	410	2	남면 별어곡2길 7	김*출	-	-	-
5	남면 문곡리	127-9	대	2,911	4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5필지			154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 위	수 량	소유자	
							주 소	성 명
1	남면 문곡리	123-8	창고	스레트 및 벽돌	㎡	51.0	남면 별어곡2길 7	김*출

정선군 공고 제2020-1226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예산 품의 금액 등을 직제에 적합하도록 조정 하고,
- 지출행위에 관한 지출절차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제 개편에 의한 국 설치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총괄채권관리관 등을 회계업무 또는 세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총괄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을 등을 기금·부채 업무 담당관으로 각각 지정하며, (안 제2조제1항 “별표1” )
-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품의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조정하고자함.(안 제5조 제1항 “별표3” )
- 아울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지출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의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회계과
- 전화 : 033-560-2274
- 팩스 : 033-560-2272
- 이메일 : minyo8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legislativenotice>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1항 중 “부군수, 실·과장” 을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으로 개정한다.

“제6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별표1,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 &lt;별표1&gt;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군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국장	-	-
정 수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관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관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현 금 출 납 외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회 계 책 임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분 임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읍·면의 지출업무담당	-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담당 : 담당·계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lt;별표3&gt;

## 예산집행 품의

관서	본 청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	비 고
본청	공사 또는 토지매입	1건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용역 또는 물품	1건 추정금액 5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3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타 지출	1건 추정금액 2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1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정선군 공고 제2020-1235호

고한읍 고한1길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행정예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정선경찰서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고한읍 고한1길 45 일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고한1길(고한리 85-18~고한리 88-1 일부)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설정하였기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예고대상 : 고한읍 고한1길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나. 일방통행 구간 설정

○ 대상구간 : 고한1길 45 일원 160m

다. 시행사유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 정선경찰서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라. 주관부서 : 정선군청 안전과(☎ 033-560-2512)

2. 관련근거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 정선경찰서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

3. 공고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년 11월 12일 ~ 2020년 12월 02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일방통행 구간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02일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일방통행로 구간 지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관 : 정선군청(안전과)
- 주 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 화 : 033 - 560 - 2512
- FAX : 033 - 560 - 2174
- E-mail : kgt1560@korea.kr

- <붙임> 1.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위치도  
 2. 의견제출서 서식. 끝.

<붙임1>

□ 일방통행 지정 구간



□ 전경사진



<고한리 85-18 ~ 고한리 88-1 일부 > 160m

□ 일방통행로 구간 설정 위치도



<붙임2>

# 의 건 제 출 서

예고내용	고한읍 고한1길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분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일방통행 구간 설정			
일방통행 구간 설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1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0-123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57번지 일원

다. 면 적 : 6,187㎡

라. 주요변경사유 : 백전초등학교 부지의 토지 현황 불일치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부합되는 결정을 통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화암면사무소

나.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20. 11. 16. ~ 2020. 12. 01.)

4.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 실음 생략

5.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화암면사무소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화암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